

# 예산총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5,700,000	21,285,000
일반회계	364,000,000	18,200,000
특별회계	56,765,000	2,838,250
공기업특별회계	49,000,000	2,450,000
상수도사업	16,400,000	820,000
하수도사업	32,600,000	1,630,000
기타특별회계	7,765,000	388,250
수질개선	1,055,000	52,750
의료급여기금운영	1,500,000	75,000
새마을소득사업	324,000	16,200
주택관리사업	350,000	17,500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1,000,000	50,000
기반시설부담금	236,000	11,800
치수사업	3,300,000	165,000
기금	4,935,000	246,750
자활기금	575,000	28,750
육외광고정비기금	135,000	6,750
노인복지기금	529,000	26,450
식품진흥기금	93,000	4,650
재난관리기금	3,603,000	180,1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27,20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